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496호 2015. 8. 26. (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15-110호 가조권역 거점면소재지마을 종합정비사업 토지세목 고시 2
- 거창군 고시 제2015-111호 도로명주소 고시 5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5-729호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가조골프장)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6
- 거창군 공고 제2015-733호 『거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9
- 거창군 공고 제2015-734호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4
- 거창군 공고 제2015-749 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24

회 람									
--------	--	--	--	--	--	--	--	--	--

가조권역 거점면소재지마을 종합정비사업 토지세목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3-13(2013.01.30)호로 고시된 가조권역 거점면소재지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8월 26일

거 창 군 수

1. 사업명 : 가조권역 거점면소재지마을 종합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산어촌마을의 거점중심공간인 면소재지 지역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생활편익, 상업, 문화, 복지 등 기초서비스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함.
3. 사업내용
 - 가. 위 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마상리 일원
 - 나. 소재지 규모 : 법정리 2개, 행정리 5개
 - 다. 면 적 : 1,526ha(농경지:307ha, 임야:1,094ha, 기타:125ha)
 - 다. 사업개요
 - 전통재래시장거리조성 : 3m보도, 다목적광장 1개소
 - 커뮤니티센터 : 건축, 전기, 통신-1식, 태양광발전(10km) 1식
 - 생태주차장 : 2개소, 95면-2,740㎡
 - 도시계획도로 : 1구간-B=5.0m, L=55m, 2구간-B=6.5m, L=63m
 - 녹지공원 : 파고라2개소, 팔각정자 1개소, 전통담장 63m, 앓음벽 70m, 스톤블럭포장, 투수콘포장, 조경식재 등
 - 재래시장정비 : 시장상가 리모델링-2동
 - 가로경관정비 : 1식
4. 소요사업비 : 7,000백만원
5. 사업기간 : 2011 ~ 2015.10.31.(당초 2014.12.20.)
6. 사업시행자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7. 관계도서의 비치 : 관계도서는 거창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지역개발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문의전화 : 055-940-5536)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내역별첨

□ 수용·사용 할 토지 세목조사

순번	군	면	리	지 번		지목	지 적(㎡)		공부상 소유자	
				본번	분할번		총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거창	가조	마상	316-3	316-3	답	1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2	거창	가조	마상	316-15	316-15	답	4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3	거창	가조	마상	316-17	316-17	답	54	5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4	거창	가조	마상	316-4	316-4	답	238	23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5	거창	가조	마상	316-18	316-18	답	95	9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6	거창	가조	마상	316-20	316-20	답	659	65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7	거창	가조	마상	316-13	316-13	답	1,074	1,07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8	거창	가조	마상	316-1	316-1	대	60	6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9	거창	가조	마상	316-2	316-2	답	120	12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10	거창	가조	마상	316-14	316-14	답	46	4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11	거창	가조	마상	316-11	316-11	답	169	16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12	거창	가조	마상	316-21	316-21	대	15	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13	거창	가조	수월	446-3	446-3	답	907	9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14	거창	가조	수월	449-1	449-1	답	1,227	1,22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15	거창	가조	수월	449-6	449-6	답	105	10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16	거창	가조	수월	449-2	449-2	답	492	49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17	거창	가조	수월	449-4	449-4	답	7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18	거창	가조	수월	451	451	전	1,933	1,93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19	거창	가조	수월	452-6	452-6	과	729	72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20	거창	가조	수월	452-8	452-8	과	73	7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21	거창	가조	수월	453	453	과	2,630	2,6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22	거창	가조	수월	456-15	456-15	전	466	46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23	거창	가조	수월	456-14	456-14	전	7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24	거창	가조	수월	456-16	456-16	전	174	17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순번	군	면	리	지 번		지 목	지 적(m ²)		공부상 소유자	
				본번	분할번		총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25	거창	가조	수월	457-12	457-12	전	170	17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26	거창	가조	수월	462-13	462-13	전	101	10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27	거창	가조	수월	448	448	전	195	195		최기원
28	거창	가조	수월	447-6	447-6	답	422	4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29	거창	가조	수월	452-9	452-9	대	141	14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30	거창	가조	수월	454-23	454-23	대	10	1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27	임진자
31	거창	가조	마상	317-1	317-1	잡	5	5	고양시 주업동1 문촌마을 108동 1205호	김인식 외 1인
계							12,329	12,329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8. 27.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88올림픽고속도로 121 외 1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가조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 공고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가조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 08. 20.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 류	명 칭	위 치	사업규모(m ²)		사업기간	최 초 결정일
			당 초	변 경		
체육 시설 (가조골프장)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산24번지 일원	573,130	572,666	당 초 2012. 01. 10 ~ 2015. 07. 04 변 경 2012. 01. 10 ~ 2015. 11. 29	경고668호 (2010.12.09)

2. 사업 규모

(단위 : m²)

구 분	계	체육시설	건축시설	공공시설	녹지	비고
당 초	573,130	223,097	4,299	53,015	292,719	
변 경	572,666	223,097	4,299	53,015	292,255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3. 사업 시행자 : (공동시행)

-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 성명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명 : 거창군수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12. 1. 10 ~ 2015. 7. 4

- 변경 : 2012. 1. 10 ~ 2015. 11. 29

※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편입 부지매입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5.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6.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제외)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8.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9.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전화(055-940-3583), FAX(055-940-3579), E-mail : cchoj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수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주 소	성 명	
합계(23필지)				572,666	572,666						
석강리(13필지) 소계				229,995	229,995						
1	거창읍 가조면 석강리	1	답	1,001	1,001		거창군				
2	거창읍 가조면 석강리	6	답	641	641		거창군				
3	거창읍 가조면 석강리	8	답	5,111	5,111		거창군				
4	거창읍 가조면 석강리	11	답	813	813		거창군				
5	거창읍 가조면 석강리	13	답	519	519		거창군				
6	거창읍 가조면 석강리	15-2	답	162	162		거창군				
7	거창읍 가조면 석강리	16	답	6,662	6,662		거창군				
8	거창읍 가조면 석강리	40	답	3,210	3,210		거창군				
9	거창읍 가조면 석강리	43	임	1,974	1,974		거창군				
10	거창읍 가조면 석강리	44	전	2,348	2,348		거창군				
11	거창읍 가조면 석강리	45-1	전	9,742	9,742		거창군				
12	거창읍 가조면 석강리	1377-4	구	2,779	2,779		거창군				
13	거창읍 가조면 석강리	산4	임	195,033	195,033		거창군				
도리(10필지) 소계				342,671	342,671						
1	거창읍 가조면 도리	689	전	754	754		거창군				
2	거창읍 가조면 도리	695	답	843	843		거창군				
3	거창읍 가조면 도리	695-1	구	307	307		거창군				
4	거창읍 가조면 도리	696	답	2,780	2,780		거창군				
5	거창읍 가조면 도리	697	임	2,370	2,370		거창군				
6	거창읍 가조면 도리	698	임	1,025	1,025		거창군				
7	거창읍 가조면 도리	820	답	1,117	1,117		거창군				
8	거창읍 가조면 도리	산10	임	332,140	332,140		거창군				
9	거창읍 가조면 도리	산13-2	임	945	945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34길 67-3	현대성외 5 인				
10	거창읍 가조면 도리	산24-8	임	390	390	1033번지	신원범				

『거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2. 제정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창군 지역주민이 생활터전 가까이에서 책이나 지식 정보를 쉽게 접하고 나누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내용

가. 군수의 책무(제2조) : ② 군수는 작은 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 및 자료 구입
2. 가구 및 전산기기 등 비품 구입
3.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사업지원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제3조)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자료와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활동을 지원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6.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다. 공간과 위치(제4조)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운영시간

1. 주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마.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 입법예고기간 : 2015. 08. 25. ~ 2015. 09. 13.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문화관광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 에게 서면이나 메일 (71pig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55)940-847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

거창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 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 및 자료 구입
2. 가구 및 전산기기 등 비품 구입
3.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사업지원

③ 군수는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2. 자료와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활동을 지원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5.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6.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

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운영자” 라 한다)”를 두며,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중심의 자원봉사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시설관리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수료한 사람
4. 1년 이상 작은도서관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작은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의무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9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기타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 라. 행위의 제한 사항(안 제4조)
- 마.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안 제5조)
- 바. 안전점검 결과 위해요소에 대한 조치 사항(안 제6조)
- 사. 안전감시망 구축 및 업무의 분담(안 제7조 ~ 안 제8조)
- 아. 예산 확보 및 지원(안 제9조)
- 자. 표창 등 사기진작 방안(안 제10조)
- 차. 시행규칙(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670-807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안전총괄과(☎ 055-940-3792, 팩스 055-940-3999, 메일 e2for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안전총괄과(☎055-940-3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 1.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거창군 세부 분장사무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충격흡수용 표면재(모래, 고무재)의 정비(교체, 보충, 보수 등)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파손) 행위
5. 취사 및 쓰레기 무단투기, 물건 적치,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①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거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제2조제2호의 개별법령에 따른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조제4호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②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총괄부서에서 실시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안전점검 실시대장

□ 놀이시설 명 :

점검일	점검결과				특이사항	점검자 (인)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항목」에 따라 월 1회 점검 후 점검결과란에 놀이기구명을 기입하고 중요한 사항을 특이사항란에 기록(위 예시 참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고리('S' 혹)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 착지판의 흠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구 분	점 검 항 목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이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집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구 분	점 검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공고

거창군 공고 제2015 - 749 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계획(개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15년 8월 26일

거창군수

1. 사업 목적 : 과수원 조성
2. 사업 지구명 : 봉계지구
3. 위치 :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157-4번지
4. 사업시행면적 : 지적면적 185,756㎡
신청면적 4,810㎡
5. 사업 개요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확대)
6. 총 사업비 : 73,000천원
7. 사업기간 : 2015. 09 ~ 2016. 08. 30(12개월)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건설과 농업기반담당